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제7조제2항 관련)

1. 소방서 소속 특수차량 인력 배치기준

구분	1급서	2급서	3급서
배치인력	30명 또는 24명	24명 또는 21명	15명
비고	국가산업단지 30명 일반지역 24명	국가산업단지 24명 일반지역 21명	

<비고>

-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별표 2 제1호에 따른 소방서 등급을 기준으로 운전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다.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퇴직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학과 학생 등 민간 소방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2. 119안전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1급 센터	2급 센터	3급 센터
배치인력	24명	21명	18명

<비고>

-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안전센터 등급 기준으로 운전대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나. 119안전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다.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퇴직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학과 학생 등 민간 소방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1급 구조	2급 구조	3급 구조
배치인력	24명	21명	18명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구조대 등급 기준으로 운전대원 및 구조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다. 지역의 소방수요를 고려하여 구조대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4. 119구조대(특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인력 배치기준
산악구조대	15
수난구조대	15
화학구조대	15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운전 및 구조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 중 특수구조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조대를 말한다.

다. 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라. 지역의 소방수요를 고려하여 구조대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5. 119구조대(직할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인력 배치기준
운영지원팀(일근)	6

직할구조대(교대)	30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조차 등의 기준에 따라 구조대원,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현장부서의 효율적 현장대응을 위하여 직할구조대와 119항공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직할구조대와 119항공대를 지휘하는 지휘관 1명, 직할구조대에 지휘관(대장) 1명을, 119항공대에 지휘관(항공대장) 1명을 각각 별도로 둔다.

6.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인력 배치기준
배치인력	구급차 1대 기준 9명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구급대 등급 기준으로 운전대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급대에 두는 구급차량은 구급차, 구급오토바이 등을 말한다.

다. 2대 이상의 구급차량을 운영하는 119구급대에는 1명의 지휘관(구급대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라. 위 표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에 있는 구급차 1대당 연간 출동건수가 3,800건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구급차 1대 기준 구급대원 12명을 배치할 수 있다.

7. 119항공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분야별)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
	기장	부기장		
인력현황(교대근무)	3	3	4	7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주유차 등의 기준에 따라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항공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정비사 1명과 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주유차 운영 등을 겸한다.

8. 소방정대의 인력 배치기준

소방정	계	항해사	기관사	진압·구조·구급·통신 대원	소형 보트		수상오토바이	
					운전	구조	운전	구조
200톤 미만	30	3	6	15	3		3	
200톤 이상	42	6	6	24	3		3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정 등을 기준으로 항해사, 기관사, 진압·구조·구급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소방정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항해사와 기관사의 경우에는 여유 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형 보트나 수상오토바이의 운영인력은 장비가 배치된 경우로 한정하되, 구조인력의 경우에는 진압·구조·구급대원이 이를 겸한다.

다. 소방정대의 지휘관(정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9.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1급 지역	2급 지역
배치인력	18	9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지역대 등

급 기준으로 운전대원, 진압대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퇴직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학과 학생 등 민간 소방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10.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교대근무 (1팀 기준)				일근근무		
	상황접수	상황관제	상황보고	구급상담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1그룹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신고건수 $\times \frac{1}{4000}$	6	4	7	10	8	5
2그룹	12개월	5	3	5	5	7	2
3그룹	※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산정함	4	2	4	4	6	2

<비고>

가. 구분란의 그룹은 각각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이 경우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신고건수는 매년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1) 1그룹: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신고건수를 12개월로 나눈 신고건수가 8만 건 초과인 경우
- 2) 2그룹: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신고건수를 12개월로 나눈 신고건수가 4만 건 초과, 8만 건 이하인 경우
- 3) 3그룹: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신고건수를 12개월로 나눈 신고건수가 4만 건 이하인 경우

나. 소방청장이 정하는 신고건수, 상황처리소요시간 등을 고려한 119종합상황실 근무에 따라 상황접수·상황관제·상황보고·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4교대(4조 2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3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다. 119종합상황실의 상황처리분석, 빅데이터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그룹별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라.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11.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대형	중형	소형
체험관 연면적	5천㎡이상	1천㎡이상 5천㎡미만	1천㎡미만
인력(명)	35	20	12

<비고>

가. 배치기준은 행정지원, 체험교육기획, 체험교육운영 인력을 포함하고, 일근근무인력으로 배치한다.

나. 소방체험관 외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